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1

발의연월일: 2020. 6. 9.

발 의 자:전용기・김종민・윤호중

김진표・송갑석・홍익표

임종성 · 박재호 · 김정호

이장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년의 취업·혼인·주거 및 임신·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,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.

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.5%에 달함에도 불구하고, 각 선거에 등록한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·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.1%, 자치구·시·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.1%, 시·도지사 선거의 경우 7.0%, 자치구·시·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.1%에 그치고 있음.

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,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·혼탁을 방지하며,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.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

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.

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기탁금"을 "기탁금(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56條(寄託金) ① 후보자등록을	第56條(寄託金) ①
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	
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	
<u>기탁금</u>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	기탁금(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
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	<u>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</u>
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	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
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비후	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
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	<u>로 한다)</u>
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	l
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	
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	
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